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7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과 개정된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다자녀 가정 등에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나.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
- 다. 5·18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동등한 예우를 함

2. 주요내용

- 가. 정기주차 적용 범위 확대(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나. 급지 개정(5개 급지 → 3개 급지)
-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 →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서울특별시 급지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
 - (신설)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
- 다. 감면 규정 폐지(승용차요일제)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면 혜택이 종료

라. 감면 규정 신설

- 의상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감면 규정 신설(8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50% 감면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8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여 동등하게 예우함
- 참전유공자·병역명문가 감면 규정 신설(50% 감면)

마. 감면 규정 정비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의 30% 감면에서,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로 개정
- 5·18민주유공자 감면 규정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동등한 예우를 함

바. 관련 법령 조항 상세 명시 및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법령의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주차장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1. 4. 14.~5. 4.) 및 재입법예고(2021. 5. 17.~5. 2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 입법예고 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참전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항을 반영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9조에 따라” 로,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을 “어느 하나” 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하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 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4급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 5급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소속공무원” 을 “소속 직원” 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30% 범위 안” 을 “30% 범위” 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27조에 따른” 으로,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으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을 “상이자로서”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를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로,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을 “지방보훈청장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별표 비고 제6호아목(종전의 마목)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으로 “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종전의 바목) 중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을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아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 직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 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 -- 제139조에 따라 ----- ----- -- 필요----- -----.</p> <p>제7조(사용 제한) ----- <u>어느 하나</u>-----.</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9조(시행 규칙) ----- <u>필요</u>----- -----.</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400</td> <td rowspan="5">60,000</td> </tr> <tr> <td>2급지</td> <td>250</td> </tr> <tr> <td>3급지</td> <td>150</td> </tr> <tr> <td>4급지</td> <td>100</td> </tr> <tr> <td>5급지</td> <td>50</td> </tr> </tbody> </table>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4급지	100	5급지	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400</td> <td rowspan="3">60,000</td> </tr> <tr> <td>2급지</td> <td>250</td> </tr> <tr> <td>3급지</td> <td>150</td> </tr> </tbody> </table>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4급지	100																								
5급지	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p><신 설></p>	<p>※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p>																								
<p><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비고> 1. -----.</p>																								

현행	개정안
<p>○ “정기주차 “라 함은 <u>소속공무원에</u>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p> <p>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u>30% 범위 안에서</u>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신 설></p> <p><신 설></p> <p>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u>100분의 50</u>을 할인한다.</p>	<p>○ -----<u>소속 직원에</u> ----- -----.</p> <p>3. ----- ----- ----- <u>30%</u> <u>범위</u>-----.</p> <p>6. (현행과 같음)</p>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u>26조 및 제27조에</u> ----- -----.</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u>상이사로서</u> -----.</p> <p>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u>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u> --- <u>지방보훈청장에 등록된 사실이</u> 확인된 -----.</p> <p>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u>할인한다.</u></p> <p>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u>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u>할인한다.</u></p> <p>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u>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u>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u>비사업용 자동차를</u>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p> <p>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p>	<p>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80-----</p> <p>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p> <p>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신설></p> <p><신설></p> <p>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삭제></p> <p>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타. 그 밖에 ----- -----.</p> <p>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이형민(02-399-9221)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총무과	통보일	2021.4.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유사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됨 - 이미 “별표 비고 2.”에서 급지 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지 조정의 큰 의미는 없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규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접근 용이성을 확보함 - 또한 “정기주차 적용범위”를 모든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그밖에 감면대상과 감면율의 신설·조정·폐지를 통해 감면대상 간 형평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u>“원안동의”</u>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09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이형민	전화번호	02-399-9221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김소영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4월 1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4월 15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1년 04월 15일</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직급		성명	이형민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p>-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 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자구 및 별표 사항(법적근거 명시, 주차요금 할인을 조정 및 신설, 적용대상 수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인권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p>					원안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주차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912호, 2021. 3. 25., 타법개정]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

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급지 요금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 5~9. 생략(관련 없음)